

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'기업 방문의 날' 업 무 협 약 서

강릉원주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연계 기업탐방 프로그램인 '기업 방문의 날' 참여와 우수기업 체험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.

제1조 (목 적)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'기업 방문의 날'과 일자리 관련 협력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며 세부내용은 협력과정에서 각 기관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.

- ① 취업연계 기업탐방 프로그램인 '기업 방문의 날'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.
- ②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
제3조 (역 할)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.

-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비롯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연계 기업 탐방 프로그램인 '기업 방문의 날'을 시행하고 편의사항을 제공한다.
- ② 강릉원주대학교는 '기업 방문의 날' 프로그램을 재학생과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홍보하고 해당기업 직무관련 전공학생을 참가시키는 등 '기업 방문의 날'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.
- ③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정보, 청년 취업준비생 정보 등을 상호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.

제4조 (신의성실 원칙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추가로 세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긴밀히 협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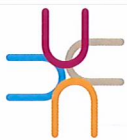
제5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사항을 협약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정보의 제공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해당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고객 등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7조 (수정 및 변경) 본 협약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,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8조 (협약기간 및 효력)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.

2019년 11월 7일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GANGNEUNG-WONJU NATIONAL UNIVERSITY

총장직무대리 **박 덕 영**



대한상공회의소

상근부회장 **김 준 동**